

의안 번호	563
----------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6. 2. 25.  
전문위원 한 미 경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563호
- 다. 제출일자 : 2026. 2. 3.
- 라. 회부일자 : 2026. 2. 11.

### 2. 제안이유

- 우리 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인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 5. 31.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89-6
- 규 모 : 대지 257㎡, 연면적 477.80㎡ (지하1층/지상3층)

나. 위탁기간 : 2026. 6. 1. ~ 2029. 5. 31.(3년)

다. 위탁사무의 범위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청소년 문화공간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주민 등)과의 우선 연계
-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 기타 “성북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위탁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최초위탁 후 재계약 1회)로 재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실시

바. 수탁자격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사. 기존 위탁현황

시설명	시설현황	위탁기간	종사 지수	수탁기관	소요예산 (‘26년 기준)
장위청소년 문화누림센터	- 위치 : 장월로 89-6 - 규모 : 477.80㎡ (지하1층/지상3층)	2023.6.1. ~ 2026.5.31.	5명	(사)한국청소년 한마음연맹 (센터장 : 김은희)	437,263(구비)

## 4.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5. 검토의견

###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5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것임
-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기존 위탁현황〉

시설명	시설현황	위탁기간	종사자 수	수탁기관	소요예산 (26년 기준)
장위청소년 문화누림센터	- 위치 : 성북구 장월로 89-6 - 규모 : 477.80㎡ (지하1층/지상3층)	최초위탁 2020.6.~2023.5. 재 계약 2023.6.~2026.5.	5명	(사)한국청소년 한마음연맹 (센터장: 김은희)	437,263천원 (구비)

### □ 주요내용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sup>1)</sup>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sup>2)</sup>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시설로
-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1)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 민간위탁의 적정성

- (법적 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sup>3)</sup>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sup>4)</sup>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 근거 있음
- (선정 절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sup>5)</sup>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절차상 타당
- (위탁 기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sup>6)</sup>에 따라 3년 범위 적정

##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구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계획인바, 법적 절차 및 위탁의 필요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3)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6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